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2차)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대료, 공과금/관리비 비용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업체를 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지원을 통해 관내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 (건강정책과)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사업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 (광주소재 사업장에 한함)

<소상공인 판단기준 : 상시근로자수 + 연평균매출액>

- ① (상시근로자수) 제조·운수·건설·광업은 10인 미만, 이외업종 5인 미만 사업자
- ② (연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참고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 * 소상공인 확인 기준(참고 3)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판단
- * 하나의 업체가 둘이상의 다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 기준
- * 동일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개 업소만 지원

○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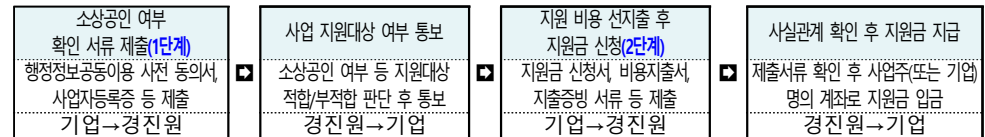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참고1)
- 기존 확진자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수혜점포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70만원
 - 지원조건 적합업체 선착순 지급이며, **지원 사업비 초과 시 지원한도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항목 :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의 임대료, 공과금(관리비 포함)
 - 임대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 * 소유주 또는 전세의 경우 임대료 항목 지원 제외
 -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과금 및 관리비
- ※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 청구된 비용 기준으로 지원하고 분기 또는 반기분 비용일 경우 월할 금액 기준 (* 신규 개업의 경우 익월 청구비용)
- ※ 모든 지출 비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12. 2(수) ~ 12. 31(목) ,마감일 18:00까지
 - ※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접수 및 지원 조기마감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urigepa@naver.com)
- 신청절차



○ 단계별 소상공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1단계	① 소상공인여부 확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상시근로자 有)
2단계	② 지원금 신청 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금 신청서(붙임2)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금 비용 지출서(붙임3)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붙임4) 사업주(또는 기업)명의 통장사본 지원비용 지출 증빙서류

* **업력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 후 제출)**

구분	산정기준
① 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2019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건강보험부과내역 제출(총 12장)

4. 문의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062-960-2633)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지원조건 적합업체 선착순 지급이며, 사업비 초과 시 지원한도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광주광역시청,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금 지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표준재무재표증명(국세청)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4	휴·폐업여부 조회(국세청)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6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 메 일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2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확진자방문일		년	월	일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사업자등록증상)		/	상 시 근로자수	명	'19년 매출액	백만원
연락처		사업장 : () - 휴대폰 : () -				
지 원 금	지급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액	원 (업체 표기 금지)				
제출서류 (별첨)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비용 지출서(붙임3) - 지원비용 지출 증빙서류 - 사업주(또는 기업명의)통장사본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3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비용 내역서**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 () -	휴대폰 : () -	
집 행	지출일	집행 내역		
		항 목	금액	결제방법
	...			
	...			
	...			
	...			
	...			
	...			
	...			
	합 계			
지출증빙 제출서류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증 등		
	공과금, 관리비	- 공과금·관리비 고지 서류 - 공과금·관리비 납부 증빙 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3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비용 내역서**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 () -	휴대폰 : () -	
집 행	지출일	집행 내역		
		항 목	금액	결제방법
	...			
	...			
	...			
	...			
	...			
	합 계			
지출증빙 제출서류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증 등		
	공과금, 관리비	- 공과금·관리비 고지 서류 - 공과금·관리비 납부 증빙 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4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광주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참고 1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제외대상
-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중기부 시행기준)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익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참고2]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참고2 참조]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분	내용	
(자금신청시점기준) 2019.4.1부터	2018년 이전 창업 기업	2018.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2019년, 2020년 창업 기업	2019년, 2020년 창업한 기업은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분	내용	
산정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② 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 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확인필요” 기간에 대출신청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1월	2월	3~12월
'17년	'18년	확인필요	'19년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확인필요	'19년
'18년 하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확인필요	'19년
'19년 ~ '20년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 연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예시
 예시1) 창업 : '17. 3. 2. / 대출신청 : '19. 1. 2
 '17. 7. 1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예시2) 창업 : '17. 8. 2 / 대출신청 : '19. 1. 2
 '17. 8. 2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 1년 매출액 환산 계산 방법 : (매출액/해당일수) X 365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법인기업	1~3월	4월	5월~12월
개인사업자	1~5월	6월	7월~12월
개인사업자 (정실신고확인대상)	1~6월	7월	8월~12월
↓			
적합한 회계기간	'18년	확인필요	'19년

·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법인면세사업자	1~3월	4월	5월~12월
개인면세사업자	1월	2월	3월~12월
↓			
적합한 회계기간	'18년	확인필요	'19년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분	내 용	
산정 기준	①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창업일 : 2017년 11월 2일, 제출기간 : 2018년 1월 ~ 12월 직원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7. 11. 20	'19. 2. 10	(직전 사업연도) '18.1월~'18.12월
예시2	'18. 2. 5		(최근 12개월) '18.2월~'19.1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 확인 예외 인정 기준

□ 소상공인 여부 적용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할 수 있다.

(예시) 2018년 소상공인 기준 해당, 2019년 소상공인 기준 초과

☞ **2020년 3월말 이전 대출신청 시 소상공인으로 인정**
(소상공인 인정기간 : 2019.04.01. ~ 2020.03.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연평균매출액 확인 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연평균매출액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업종 음식업, 2020년 4월 대출신청

2017년 연매출액 8억원, 2018년 연매출액 9억원, 2019년 연매출액 11억원

☞ **17~19년 3년간 평균매출액 934백만원으로 음식업 소기업 기준(10억원) 이내 이므로 소기업으로 인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